

1) 법 제32조제1항(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제1항제5호, 제47조제8항 및 제49조제8항	1,000		500	500					
2) 법 제32조제2항 본문(법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	법 제40조제1항제5호, 제47조제8항 및 제49조제8항	1,000		500	500					
3) 법 제32조제2항 단서(법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	법 제40조제1항제5호, 제47조제8항 및 제49조제8항	200		50	50					
라. 법 제33조(법 제43조제1항, 제45조제1항, 제47조제2항, 제49조제2항,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	법 제40조제1항제6호, 제43조제7항, 제45조제7항, 제47조제8항, 제49조제8항,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	500	500	500	500	500	500	500	500	500
마.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(법 제43조제2항·제3항, 제45조제2항·제3항, 제47조제3항·제4항, 제49조제3항·제4항, 제51조제2항·제3항 및 제53조제3항·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·양수한 경우 또는 합병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제1항제7호·제8호, 제43조제7항, 제45조제7항, 제47조제8항, 제49조제8항,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	1,000	1,000	500	500	500	500	500	500	500
바. 법 제36조제2항(법 제43조제4항, 제45조제4항, 제47조제5항, 제49조제5항,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제1항제9호, 제43조제7항, 제45조제7항, 제47조제8항, 제49조제8항,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	1,000	1,000	200	200	200	500	500	500	500
사.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(법 제43조제5항, 제45조제5항, 제47조제6항, 제49조제6항, 제51조제5항 및 제5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제1항제10호, 제43조제7항, 제45조제7항, 제47조제8항, 제49조제8항,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	1,000	1,000	500	500	500	500	500	500	500
아. 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(법 제43조제6항, 제45조제6항, 제47조제7항, 제49조제7항, 제51조제6항 및 제5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제1항제11호, 제43조제7항, 제45조제7항, 제47조제8항, 제49조제8항,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	1,000	1,000	500	500	500	500	500	500	500
자. 법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제1항제12호, 제43조제7항, 제45조제7항, 제47조제8항, 제49조제8항 및 제51조제7항	100	100	50	50	50				

차.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 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 유가 있는 경우	법 제40조제1항제14호, 제 43조제7항, 제45조제7항, 제47조제8항, 제49조제8항,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 항	1,000	1,000	500	500	500	500	500	500
--	--	-------	--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